

October 07, 2013

워크아웃 중 출자전환에 의한 주식 취득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의 예외인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

1. 사안의 개요

산업은행 등 금호산업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의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상 워크아웃 진행중인 금호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는 금호산업에 대한 기업어음(CP) 790억원을 금호산업의 신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30.08%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동 방안에 따라 출자전환을 하여 금호산업의 신주를 취득하게 되면 이들간 상호출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호아시아나기업집단 소속 회사들로,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의 수령 등의 사유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호출자가 허용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할 의무가 부과됩니다(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을 통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것이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된다면 출자전환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상화방안은 그 자체로 위법한 상호출자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2010. 9. 16. 대법원은 워크아웃과정에서의 출자전환의 일환으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사례에서, 해당 합의가 상계계약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판결).

아시아나항공의 일부 주주는 동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이 출자전환의 법적 성질은 대물변제가 아닌 상계로 판단하였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의 결과 금호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의 예외(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상호출자를 내용으로 하는 정상화방안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정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9. 17.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채권 출자전환은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기업 어음채무 대신 신주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볼 수 있어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촉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금납입 하루 뒤 신주발행이 이루어지는 상법 절차상 CP채권은 주금납입 기일에 소멸하고 그 익일인 신주발행일에는 존재하지 않아 대물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채권소멸시점은 당사자의 합의(상계계약)에 의해 신주발행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대물변제의 성립 인정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다97218 대법원 판결은 기촉법상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시 채권소멸의 범위, 채권소멸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다툼 사안으로, 기촉법상 출자전환의 전체적인 법적 성격이 대물변제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한 것도 아니므로, 본건 출자전환을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해석하더라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본건 출자전환이 계열 확장, 지배력 강화 의도가 있는 상호출자와는 달리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상호출자금지의 규제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본 사안의 의미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호산업은 차질없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본건 유권해석을 통하여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워크아웃절차에서도 적법하게 출자전환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되어,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과정에서 채권단 및 금호산업측을 대리하였고,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대법원 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의 규제 취지와 상법상 주금납입 절차 및 민법상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본건 출자전환이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호산업의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재우 변호사	TEL. 02 316 4275	E-Mail. jwim@shinkim.com
● 박주영 변호사	TEL. 02 316 4692	E-Mail. jyoungpark@shinkim.com
● 조창영 변호사	TEL. 02 316 4631	E-Mail. cycho@shinkim.com
● 홍소현 변호사	TEL. 02 316 4703	E-Mail. shyhong@shinkim.com
